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78
----------	------

제출년월일 : 2008년 8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정이유

- 본 조례 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조성자문위원회설치 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8. 4.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충청북도조례 제3077호)됨에 따라.
- 그 후속조치로 제천시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지원사업(안 제4조)

-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 5) 연수타운 조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 6)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서울 제천학사 입사자격 부여
- 7) 그 밖의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연수원 건립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급(안 제5조)

제천종합연수타운 내 입주하는 연수원에 대해 입주보조금 지급

라. 재정지원(안 제6조)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 파견(안 제7조)

도지사 소속하에 연수기관유치추진단에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천시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함.

바.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종합연수타운”이란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하는 연수기관의 집단화 지역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 공공기관·단체, 기업체가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이란 공공기관·단체가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연합하여 설치·운영하는 연수기관을 말한다.
4. “입주기관 임직원”이라 함은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제천시장은(이하 “시장”라 한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5. 연수타운 조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6.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서울 제천학사 입사자격 부여
7. 그 밖의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수기관 건립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연수기관 및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이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연수기관을 건립하는 경우 부지 매입비용 20억원 초과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 및 국가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할 연수기관 유치를 위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연수기관유치추진단에 도지사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이하 "조성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자문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710호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

신·구조문대비표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생략) ②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 ③ (생략)</p>	<p>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 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전문개정 2008. 1. 4 조례 제834호]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3$ /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m^3$ /일 이상인 경우 $10m^3$ /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3 /일)에 단위단가(원/ m^3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태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4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 5. 2 규칙 제396호]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 한 팀장(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자
4.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달라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 2008. 6. 5 조례 제858호]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개정 2008.6.5>

②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신설 2005. 9.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4-04 조례 제 30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종합연수타운”이란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하는 연수기관의 집단화 지역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 공공기관·단체, 기업체가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이란 공공기관·단체가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연합하여 설치·운영하는 연수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5. 기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가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기관유치추진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할 연수기관 유치를 위하여 연수기관유치추진단(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천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748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6. 27.

제 천 시 장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본 조례 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조성자문위원회설치 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8. 4.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충청북도조례 제3077호)됨에 따라.
- 그 후속조치로 제천시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시장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지원사업(안 제4조)

-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 5) 연수타운 조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 6)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서울 제천학사 입사자격 부여
- 7) 그 밖의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연수원 건립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급(안 제5조)

제천종합연수타운 내 입주하는 연수원에 대해 입주보조금 지급

라. 재정지원(안 제6조)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 파견(안 제7조)

도지사 소속하에 연수기관유치추진단에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천시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함.

바.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17일 까지 제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년 7월 17일(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시청홈페이지(www.okjc.net)

다. 기자내용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제천시장(전략사업팀장)

○ 주 소 : (390-701) 제천시 시청길15 (천남동)

○ 연락처 : 641 - 5043, FAX 641 - 5049, 담당자 : 정상진

★지방행정 주사보	전략사업 팀	정	정	정	정
정상진	07/18 고수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8-748호
3. 공고기간 : 2008. 6. 27. ~ 7. 17.(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시보 83회, 시 홈페이지 : 254회(다운로드57회)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별지) 끝.